

[등록번호 20141252] [최초 등록일 2014-12-23] [최종 등록일 2024-10-31] 홈페이지

이메일 byjun10@naver.com

[복어잡는사람들]

정 보 공 개 서

에스제이푸드시스템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4. . .

에스제이푸드시스템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 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 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 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 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 시기 바랍니다.

[주소 :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9길 51 (정평동)]

[대표전화번호: 053-815-9951]

『대표팩스번호:-》

『가맹사업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가맹사업팀 053-815-9951 』

○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П.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에 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사용 브랜드		주 소					
	[복어잡는사람들]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9길 51 (정평동)					
에스제이푸	설립일	법인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드시스템	2012.01.11	_	2012.01.11	송미혜	053-815-9951		_	
	법인등록번호	호	_	사업자등록번호		į	515-07-53288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 / 상호	영업표지	주소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9길 5	1 (정평동)		
사용인 (배우자)	전부열	복어잡는사람들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 · ,			송미혜	053-815-9951	_		
			Ö f I HILLET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 [복어잡는사람들]의 내용

○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복어잡는사람들]	
상 호	[복어잡는사람들] OO점	
상표(서비스표)	₩ 복어잡는 사람들 [®]	· 등록번호 4101879210000 (2009.07.17)

광 고	
그 밖의 영업표지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기간에 대한 재무증빙자료로 「재무제표」를 첨부합니다.

(단위 : 천원, V.A.T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손실)	당기순이익(손실)
2021년	61,064	2,505	58,559	142,235	4,478	4,569
2022년	43,155	3,392	39,763	150,902	10,699	10,904
2023년	30,981	2,311	28,670	195,033	17,291	17,306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복어잡는사람들] 가맹사업과 관련한 매출액은 위 금액과 같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THE RESIDENCE OF THE PARTY OF T				
관련여부 이름	OI =	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송미혜	대표	2012.01.11 ~ 현재		ᇫᇫᆔᆽᄆᆝᅕᇕ		
관련임원	공미에 	내표	2012.01.11 ~ 현재	대표	소스제조 및 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	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의전구(8 <i>)</i>
2023년 12월 31일	1	0	0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출원번호	등록번호	소유자	존속기간만료일

		(출원일자)	(등록일자)	(등록신청자)	
	인테리어, 간판, 상징				
[보이자드시라드]	물, 광고홍보물, 집기	4120080022449	4101879210000	전부열	2029년 07월
[복어잡는사람들]	비품, 문구류 등에	(2008.08.20)	(2009.07.17)	(전부열)	17일
	표시				

- 위 영업표지는 당사가 상표권 소유자 (등록신청자) 와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사업 영위 기간동안 당사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 (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복어잡는사람들] 가맹사업 현황

1. [복어잡는사람들]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2012.01.11

2. [복어잡는사람들] 연혁

		ZANE A PAINTEN	A PAPENTATIONAL ASSENT		
가맹본부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에스제이푸드시	[복어잡는사람들]	송미혜	2012 01 11 ~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9길 51	
스템	[국이입근자람들]	등미에	2012.01.11	(정평동)	

한국공정거래조정원

3. [복어잡는사람들] 업종

영업표지	업종			
[복어잡는사람들]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국어업근사람들]	기타외식	복어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N ¬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4	4	0	4	4	0	4	4	0
서울	_	_	_	_	_	_	-	_	_

부산	_	_	_	_	_	_	_	_	_
대구	3	3	0	3	3	0	3	3	0
인천	_	_	_	_	_	_	_	_	_
광주	_	_	_	_	_	_	_	_	_
대전	_	_	_	_	-	_	_	_	_
울산	_	1	_	_	1	_	_	_	_
세종	_	_	_	_	_	_	_	_	_
경기	_	-	_	_	ı	-	_	_	_
강원	_	_	_	_	_	_	_	_	_
충북	_	_	_	_	-	_	_	_	_
충남	_	_	_	_	_	_	_	_	_
전북	_	_	_	_	_	_	_	_	_
전남	_	_	_	_	_	_	_	_	_
경북	1	1	0	1	1	0	1	1	0
경남	_	_	_	_	_	_	_	_	_
제주	-	-	_	_	_	-	_	_	_

5. 최근 3년간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4	0	0	0	0	4
2022	4	0		700	0	4
2023	4	KOPEA FAI	DO O TO	TION AGENCY	1	4

6. [복어잡는사람들]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 당사가 [복어잡는사람들] 외에 최근 3년간 가맹사업을 경영하거나,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 [복어잡는사람들] 가맹점사업자당 2023년에 영업한 연간 평균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다음 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지역	2023년 말	연간 평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 (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 (하한)					비고
7(1	가맹점수	연간 평균	면적	상한	면적	하한	면적	017
		매출액	3.3m ² 당	(a) 51	3.3m²당	5 5	3.3m²당	
전체	4	해당사항없음		_		_		5개점 미만
서울	_	_		_		-		

부산	_	_	_	_		
<u></u> 대구	3	해당사항없음	_	_	5개점	미만
 인천		-	_	_	011112	
광주	_	_	_	_		
 대전	_	_	_	_		
울산	_	_	_	_		
세종	_	_	_	_		
경기	_	_	_	_		
강원	-	_	_	_		
충북	_	_	_	_		
충남	_	_	_	_		
전북	_	_	_	_		
전남	_	_	_	_		
경북	1	해당사항없음	_	_	5개점	미만
경남	_	_	_	_		
제주	ı	_	_	_		

○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가맹본부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복어잡는사람들]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 [복어잡는사람들]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 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12.31일 기준	4	3,561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 당사는 [복어잡는사람들]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 당사에서 2023년에 [복어잡는사람들] 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없습니다.

11. 가맹금 예치 기관

○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예치하여야 할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담당부서	주소	전화번호
대구수성우체국	금융팀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320(수성동)	053-757-1030

○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우체국]에 계약 체결일로 부터 3일내에 방문하여 예 치신청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또한 [우체국]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 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제1항 본문에서 정한 가맹금 예치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서울보증보험과 피해보상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보험인(보험회사)	서울보증보험(주)	
보험계약자	에스제이푸드시스템 대표	가맹본부
피보험인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보험기간	가맹금예치기간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점사업자 영업개시일까지)	
보험금액	예치금액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 불이행	
부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 귀하가 [복어잡는사람들]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또는 보험	확정 금액
보증금	보증금 가맹본부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6,500				
			가맹사업법 제10조	가맹점모집을 위해	오픈상담,장소선
가입비	11,000	계약체결 후 3일 이내	가행사립립 제10조 사유 발생시	가행점모접을 위해 비용 소요	정지원비,계약금
				. –	UIO OII
교육비	5 500	계약체결 후	교육개시 1일	교육개시	교육이 시작되면
业专可	5,500	3일 이내	이전에 계약해지	포축게시	반환되지 않음.
개업지원비	0	계약체결 후 3일 이내	개업전 계약해지	개업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없음)

		A second monaco A d	and the same to the same of th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미고
계약이행보증금	10,000 K	ORF 4 FAID TRAD 3일 이내	계속가맹금 및 상품 등의 대금과 관련한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액의 미지급	

-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금 액
합계	26,500
최초가맹금	16,500
계약이행보증금	10,000 (V.A.T 없음)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첨부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3.3㎡당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고
기준			23	32㎡(70평)기준	<u> </u>	
총계		247,500	3,535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협력업체)	192,500	2,750	계약금 20%, 중도금 40%, 잔금	공사착수전 계약취소 (계약금 상당액 제외)	현장실측에 따라 금액변동
간판	(협력업체)	11,000	157	40%, 잔금 40%	u	
기자재,집기류	(협력업체)	44,000	628	납품후 결제	u	내역 첨부 참조
pos	(협력업체)	임대		_	_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사업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이므로 실제 지불금액과 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구고자 거리 조자의

- 가맹점 사업자와의 도면협의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되는 공사 (소방관련 인허가비, 실외공사,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전면·입구창호공사, 철거, 건물 방수 및 단열, 공조냉난방공사, 전기증설공사, 스피커, 주방집기·후 드 일체 등) 와 그에 해당하는 비용은 별도이며 이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에 결정하도록 합니다.
- 인테리어공사시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거래할 경우 귀하는 당사에 3.3 m^2 (평)당 금 오십오만원(₩550,000)(VAT 포함)의 감리비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 당사는 신규 가맹점의 입지 선정에 직접적으로는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희망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희망자가원하는 지역을 파악하고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최적의 입지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최종결정은 가맹점 희망자의 의사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1) 가맹점 사업자가 점포 위치를 선정하여 오는 경우 기존 가맹점에 대한 영업지역권 침해 여부 등을 고려한 후 신규 가맹점의 위치를 허가 함. 만약 조건에 맞지 않으면 입지 변경 권유함

- 2) 가맹점 사업자가 점포 입지 선정을 요청할 경우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 가맹희망자의 최종 결정 3) 가맹본부가 점포입지를 선정해 놓은 경우 가맹희망자에게 점포입지 안내 → 가맹희망자와 담당자가 현장 확인 → 가맹희망자의 최종결정
-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ㆍ채용 기준
-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기준	계약·채용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19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공급업체
- [복어잡는사람들]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물품의 상세 내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8) 당사는 가맹금의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가맹금에 대한 분할 납부를 받지 아니합니다.
- 2. 영업 중의 부담
- 1) 비용 부담
-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이 정보공개서 [V.9]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상표사용료 등 Royalty	가맹본부	가맹점 월매출액의 4%	익월 5일	-	후불	
전국(지역)단위 상품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가맹본부 30% 가맹점전체70%	광고계획통지 일로부터 14 일이내	미반환	소멸성비용	광고시점에 서면을 통한 별도협의
전국(지역)단위 판촉비 분담금		항목별 분담	추후협의	미반환	소멸성비용	판촉시점에 서면을 통한 별도협의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교육에 따라 다름	교육개시당일 완납	교육개시전 계약해지	교육개시	교육내용에 따라 금액은 변경됨
영업지역 보장금		해당없음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협력업체)	11,000	설치 후 결제	-	_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 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시설, 각종기기의 교체·보수비용		협의	교체·보수시			교체·보수 필요시 시설 기기등의 내구연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
점포환경개선 비용	미지정	가맹본부 분담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VII. 1. 참조
재고관리 비용		해당없음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회계처리 비용		해당없음 🛕	AIR TRADE MEDI	ATION AGENC	enme Y	
POS 사용료		해당없음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20%	지급기일의 다 음날부터 지급 하는 날까지			일체의 금전지급의무 를 지체하는 경우 부담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원부재료사용	가맹본부가 제공한 원부재료의 사용 및 사입여부 조사	월별 1회	문의 : 본사
회계처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월별 1회	문의 : 본사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추가로 부담하는 내역은 없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락한 영업표지가 등록거부, 기간 만료 등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식재산권을 보유하지 못하거나 당사자간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영업표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하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당사가 지식재산권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협조하에 영업표지가 변경되는 경우 귀하는 변경 전의 영업표지를 사용할 수 없고 변경 전의 영업표지가 부착된 제품 기타 점포설비 등은 당사의 요청에 따라 처분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른 제반비용에 대하여는 당사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가, 이외의 경우에는 귀하가 당사와 각각절반하여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귀하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귀하는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 귀하가 운영하는 [복어잡는사람들]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보증금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이 정보공개서 [V.7] 에 나와 있습니다.
-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가맹점 사업자는 계약해지일 또는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당사에 대한 채무전액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 채무상환이 지연되는 경우에 가맹점 사업자는 위 지급일의 다음날로부터 변 제일까지 연체된 채무액의 연20%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되면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영업표지나 노하우등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당사의 영업표지가 표기된 모든 시설물ㆍ비품ㆍ집기 등을 계약해지일 또는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수 있습니다. 이때 철거ㆍ원상회복의 비용은 계약이 귀하의 귀책사유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귀하가부담하고 당사의 귀책사유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당사가 부담한다. 다만, 합의해지의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그 비용을 분담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철거·원상회복의무를 지체한 경우에는 당사가 직접 철거·원상회복을 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우선 정산하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고 일정범위 내(10%~90%)에서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복어잡는사람들] 가맹점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E MEDIATION AGENCY

in fair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 귀하가 [복어잡는사람들] 가맹점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복어잡는사람들]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 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2023년에 수취한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 2) 당사가 [복어잡는사람들]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2023년에 수취한 경제적이익은 없습니다.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다음의 지정된 상품 류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불고기+탕OR지리+껍질무침회 까치불고기+탕OR지리+껍질무침회		참복불고기				
2인	복불고기+탕OR지리+황복튀김+껍	복어불 고기	까치복어불고기				
셋트	질무침회 메치보브그기, 차타OD지기, 하보티		복어불고기				
	까치복불고기+참탕OR지리+황복튀		- H O H / O O H	N AGENCY			
	김+껍질무침회 복불고기+탕OR지리+황복튀김+껍		참복어찜/맑은찜	/IX //W/LINW I			
	고울고기·SUN시디·S크ㅠㅁ·합 질무침회		(수육)	① 당사가 제공한			
3인	까치불고기+탕OR지리+황복튀김+	TI 0 1	생밀복찜/맑은찜	조리기준에 따라	따라 1회 위반 : 기재된 구두경고	2023. 12.	
셋트	껍질무침회	찜&수	(수육)	제공할 것			
	까치불고기+참탕OR지리+황복튀김	육	황복어찜/맑은찜	② 왼쪽에 기재된			
	+껍질무침회+황복찜		(수육)	이외의 제품을 판 매할 수 없음 ③ 판매를 원할 경 우 본사와 협의후			
	복불고기+탕OR지리+황복튀김+껍		복어찜/맑은찜(수			서면시정요구	기준
	질무침회+찜		육)			③ 판매를 원할 경	3회이상위반 :
4인	까치불고기+탕OR지리+황복튀김+		참복어탕/지리		계약해지		
셋트	껍질무침회+찜		삼독여왕/시디	· 서면 동의를 받을			
	까치불고기+참탕OR지리+황복튀김	탕&지	생밀복탕/지리				
	+껍질무침회+황복찜	리		건			
	복불고기+탕OR지리+황복튀김+껍	니	황복어탕/지리				
	질무침회+맑은찜+찜		₩ NIEF/TIJI				
5인	까치불고기+탕OR지리+황복튀김+		복어탕/지리 				
셋트	껍질무침회+청복맑은찜+황복찜	튀김&	황복튀김				
	까치불고기+참탕OR지리+황복튀김	무침		_			
	+껍질무침회+청복맑은찜+황복찜	+ 0	껍질무침회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통

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전 상품의 주재료는 가맹본부에서 협의된 사항들로 사용하고 부재료 또한 가맹본부에서 개발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조리시 표준화된 조리법을 사용, 동일한 맛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ㆍ용역의 판매 제한
- 당사가 현재 취급하는 상품·용역 중에는 거래 상대방에 따라 판매를 제한하고 있는 상품은 없습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 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곳정거래조정워

	상품명	가격		상품명	가격	가격통보방법	비고	
	불고기+탕OR지리+껍질무침회 34,000 참		참복불고기	25,000				
	까치불고기+탕OR지리+껍질무침회	41,000	복어불고					
2인셋	복불고기+탕OR지리+황복튀김+껍질	45,000	기	까치복어불고기	15,000			
트	무침회	,	71	せいロココ	12.000			
	까치복불고기+참탕OR지리+황복튀김	70,000		복어불고기	12,000			
	+껍질무침회	70,000		참복어찜/맑은찜	45,000-			
	복불고기+탕OR지리+황복튀김+껍질	63,000		(수육)	65,000			
	무침회			생밀복찜/맑은찜	35,000-			
3인셋	까치불고기+탕OR지리+황복튀김+껍	77.000	77,000				홈페이지	0000 10
트			찜&수육	(수육)	45,000	또는 이메일 공지	2023. 12. 기준	
				황복어찜/맑은찜	30,000-			
				(수육)	40,000			
	복불고기+탕OR지리+황복튀김+껍질	92,000		복어찜/맑은찜	25,000-			
	무침회+찜	92,000		(수육)	35,000			
4인셋	까치불고기+탕OR지리+황복튀김+껍	108,000		TLE OLEL/TIDL	10.000			
= ⊢	질무침회+찜	100,000		참복어탕/지리	19,000			
	까치불고기+참탕OR지리+황복튀김+	160,000	탕&지리	생밀복탕/지리	14,000			
	껍질무침회+황복찜			황복어탕/지리	12,000			

	복불고기+탕OR지리+황복튀김+껍질					
	무침회+맑은찜+찜	115,000		복어탕/지리	8,000-	
5인셋	까치불고기+탕OR지리+황복튀김+껍	150.000		흥타다기	25,000-	
	질무침회+청복맑은찜+황복찜	150,000	튀김&무	황복튀김	35,000	
	까치불고기+참탕OR지리+황복튀김+	200 000	침	ᄁᄁᄀᄀᆉᆕ	17,000-	
	껍질무침회+청복맑은찜+황복찜	200,000		법질무침회	20,000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 1) 영업지역 제도 유무와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여부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시 가맹점사업 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522 US DT	가맹본부	계열회사	
KOREA FAIR TRAI 복어류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음식업, 가맹사업	DE MEDIATION AGENCY 복어잡는사람들	없음	

-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기준	설정방법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500m를 기준으로 함이 원칙임. 단, 상업지역내 핵심상권지역, 노선단절지역, 백화점등 특수상권,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의 경우에는 제외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 별첨을 원칙으로 함)		

-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1. 재건축, 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 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2.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3.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존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 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 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	영업지역 변경(안)을 통 지하고 30일 이내에 동 의여부 회신, 동의가 있 는 경우 영업지역 재조 정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지역 재조정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 동안 기존 영업 지역 내에서 당사의 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영업지역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영업지역 변경(재조정)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거나 동의여부에 대한 회신 이 없는 경우, 당사는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변경하고 직영점이나 다른 가맹 점을 설치할 수 도 있습니다.
-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간의 보상금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 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 위

-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당사는 [복어잡는사람들]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 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마	H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10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 1) 가맹계약의 기간
- [복어잡는사람들] 가맹점사업의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계약을 갱신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합니다.
-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 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기간 (만료일: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 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_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JATION AGENCY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6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38조 1항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후 2개월이 경과하여도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2. 가맹점사업자 당사의 승인을 얻지 못한 상품 및 원·부재료를 별도로 구매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3. 가맹점사업자가 원·부재료의 대금, 정기납입금, 기타 채무의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정기납입금 등의 산정을 위한 총매출액등 회계자료를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 5. 가맹본부의 품질관리기준을 6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협의 없이 점포 운영을 3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광고·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8.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나 가맹점 운영 주요지침 또는 매뉴 열의 위반을 지적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계약의 일반적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3. 가맹점사업자가 원·부재료의 대금, 정기납입금, 기타 채무의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정기납입금 등의 산정을 위한 총매출액등 회계자료를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 5. 가맹본부의 품질관리기준을 6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협의 없이 점포 운영을 3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광고·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8.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나 가맹점 운영 주요지침 또는 매뉴	2. 가맹점사업자 당사의 승인을 얻지 못한 상품 및 원·부재료를 별도로 구매하여 판매	
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협의 없이 점포 운영을 3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광고·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8.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나 가맹점 운영 주요지침 또는 매뉴 제39조제1형	3. 가맹점사업자가 원·부재료의 대금, 정기납입금, 기타 채무의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정기납입금 등의 산정을 위한 총매출액등 회계자료를 허위로 통지하는	
9.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경영지도를 받음에 있어 성실의무 및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10.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동일 업종의 가맹점을 운영하거나 그러한 가맹사업에 참여하고 그와 업무를 제휴하는 경우. 11.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지 않고 영업을 양도, 임대하거나 영업재산을 담보로 제공한경우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12. 기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방침등 거부를 선동하거나 협박하는 등 부도덕한 행위 또는 불법행위 등이 입증되어 가맹본부나 다른 가맹점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	5. 가맹본부의 품질관리기준을 6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협의 없이 점포 운영을 3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광고·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8.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나 가맹점 운영 주요지침 또는 매뉴 얼의 위반을 지적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경영지도를 받음에 있어 성실의무 및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10.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동일 업종의 가맹점을 운영하거나 그러한 가맹사업에 참여하고 그와 업무를 제휴하는 경우. 11.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지 않고 영업을 양도, 임대하거나 영업재산을 담보로 제공한경우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제39조제1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 통지 없이 즉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즉시해지 사유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제39조 2항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6.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8.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9.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은 후에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수정사유	재조정절차	동의절차
①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경우 ②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에 대한 고시 등이 있는 경우 ③시장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계약서를 수정하지 않으면 가맹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 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20일 이내에 동의여부에 대한 회신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당사는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개인 사정 등으로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새로운 가맹점사업자에 우선하여 가맹점운영권을 다시 사들여 직영점 체제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매 조건	환매 절차	비고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에서 정한 매출액등 가맹점운영 기준 이상일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가맹본부에 환매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현장조사 포함 약20일 가량 소요) → 환매 여부 통지 → 가맹점사업자,가맹본부 양도계약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가맹본부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가능조건	양도절차	비고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양수인 면담 포함, 2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 → 가맹점운 영권 이전 완료	문의:가맹본부

-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잔여 계약기간에 한하여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수인은 최초가맹금 및 계약이행보증금의 금원을 영업개시일 전까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당사는 가맹점 운영권의 대리나 위탁운영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당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여부	이전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시	모든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상속승인신청->당사 담당팀 검토(상속인 면담 포함, 20일 가량소요) ->승인여부 통지 ->가맹본부의 상속에 의한 사업자변경계약 체결 ->가맹점운영권 상속완료	교육수료 및 교육비지급
대리행사	불가능	해당없음	해당없음	
업무위탁	불가능	해당없음	해당없음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가 [복어잡는사람들] 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 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되는 업종	경업허가절차	비고
당사에서 판매하는 메뉴를 매장에서 즉석 형태로 만든 후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 하는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2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가맹본부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 당사는 [복어잡는사람들]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0:00 ~ 22:00	1	 문의:가맹본부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9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규정상 3일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영업을 중단할 경우 물품공급을 중단하는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 귀하가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을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여부	대체가능인력	비고
매장의 규모에 따라 다름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점주의 부재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항목	감독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매장 청결(4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분기	가맹본부	
친절도(5항목)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 → 주문 →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1회/분기	가맹본부	
품질 관리(7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분기	가맹본부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비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점검하는 방식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본사의 영업방침에 대해 교육을 받은 슈퍼바이저를 통해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므로 방문마다 별도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점검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로 공지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 당사는 [복어잡는사람들]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분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성격	서겨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十正	9797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군요 크시	미끄	
광고	상품광고	전체광고 비용의 30%	전체광고 비용의 70%	광고계획 공고 → 가맹점 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대중매체광고,	
전체행사	가맹점모집 광고	전액부담	없음	광고부담금 납부(제시일 로부터 14일 이내) → 광고개시	지역언론매체 등	
판촉 전체행사	할인서비스, 멤버쉽제휴 서비스등	판촉활동을 위한 통일적 현수막·전 단·카달로그 등 제 작과 관련한 로그· 디자인 작성비용 등 기획비용	상품의 할인비용, 제공하는 경품· 기념품 등의 비용 및 현수막·전단·카 달로그 등 제작·배 포비용등	판촉계획 공고 → 가맹점 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및 행사개시	기타비용 균등부담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 귀하는 자신의 비용으로 영업지역 내에서 독자적으로 광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광고의 계획과 문안, 기타 광고와 관련된 세부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 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당사 또는 당사소속 임원이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 규에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에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귀하가 예치가맹금을 납입한 후 당사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귀하가 당사에 배상해야 할 위약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해지 요청일	위약금	비고
예치가맹금 납입후 영업개시 이전	가맹계약서 제15조 ① 가입비의 70%	부가가치세 없음
영업개시 후	가맹계약서 제17조 ① 최초가맹금의 150%	부가가치세 없음

- 귀하가 가맹계약 종료후 철거·원상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당사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위반일로부터 1일당 금 일십만원(₩100,000, 부가가치세 없음)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41조(가맹점사업자의 비밀유지, 경업금지 의무)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동조 제4항에서 정한 당사의 손해액은 가맹계약서 제17조 ① 최초가맹금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합니다. 또한, 귀하의 의무위반 행위로 인하여 당사에 추가적으로 손해

가 발생한 경우에 귀하는 당사에 그 손해도 배상하여야 합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은 약 45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5일 내외	274,000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비용없음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	15일 내외소요	비용없음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선택사항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anne muse à 400 à	없음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인국 중 경기 대 :	D-30	없음	
가맹금 예치	- 가맹금 예치OREA FAIR TRADE MEDIATIO	N ADE 29(1일)	26,500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25(3일)	없음	
간판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11,000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100 500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5(20일)	192,500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20~4(10일)	가맹금예치	
기자재, 집기등 입고	- 기자재 및 집기, POS 입고	D-4	44,000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잔여금액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 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가맹본부와 계약체결 후 3일 이내에 별도로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농협은행]에 가맹금 예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의 작성은 가맹본부와 협의하에 작성하여야 하며 발급받은 예치증 서는 보관하고 있어야하고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 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국공정거래 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

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아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아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 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으간판교체 비용 으인테리어 공 사비용(장비·집 기의 교체비용 을 제외한 실내 건축공사에 소 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 사업의 통일성 과 무관하게 가 맹점 사업 자가 추가 공사를 실 시함에 따라 소 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확장또는이전을수반하지않는점고환경개선:20%○점포의확장또는이전을수반하는점포환경개선:40% EA FAIR TRADE ME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 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 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 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 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 에서 분할지급 가능.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 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 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 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이 AGENCY (1차:청구일로부터 90 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1차 지급일 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 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 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 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 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 담액을 지급	아점포환경개선일 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 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 영업양도 포함)되 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 간에 비례하는 부 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판촉지원	판촉활동을 위한 통일 적 현수막·전단·카달 로그 등의 제작과 관련 한 로그·디자인비용 등 기획비용	전국 또는 지역단위 판촉행사시 (당해 지역 가맹점 해당)	가맹계약기간	소요되는 비용 전액 당사 부담	

3. 경영활동 자문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가맹본부 요청 시	제품, 설비(집기), 판매촉 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 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 맹 본 부 부 담
가맹점사 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 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 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 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다 (가맹금에 통 (가맹금 등 경영 자도 비용 지도 비용 부분에 함)

4. 신용 제공 등 내역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을 제공하거나 자금을 알선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의 지원내역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별도의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 당사는 [복어잡는사람들]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교육	회사 소개, 제조, 재고관리, 물품주문 및 구입 등	본사 + 현장교육	영업개시 3일전	필수교육
보수교육	신 매뉴 가공, 종업원 관리 실무 등	이론 + 실습교육	교육내용에 따라 다름	비정기적 필수교육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 귀하가 [복어잡는사람들] 가맹점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nny ann a mus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최소시간	비용	비고
신규 교육	20일	5,500	현장교육 포함
보수 교육	상황에 따라 다름 KOREA FAIR TRADEN	상황에 따라 다름	

3. 교육・훈련의 주체

○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기한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21조에 따라 협의 후 교육일정을 조정하여 수료 하여야 하며 신규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자는 음식의 조리 및 가맹점의 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없음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2023.12.31일 기준	비고
없음	

3. 바로 전 사업연도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비고
0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 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http://franchise.ftc.go.kr)**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 1 : 공급 원 · 부재료 등의 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첨부 2: 가구, 기물, 집기 등 목록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첨부3: 직영점 및 가맹점 목록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